

제 목 : 금융위의 키코 관련 유권해석 내용 설명 [뉴시스 등 5.27일자 보도 관련]

1. 기사내용

- □ 뉴시스, 데일리안, 아이뉴스24 등은 5.27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
 - ① 금융위 "키코 배상해도 배임 해당되지 않는다" 최종 유권해석
 - ② 금융위가 키코 배상에 나선다고 은행법을 위반해 배임이 발생하진 않는다는 답을 내리면서...
 - ③ 은행권이 배임 우려로 인해 배상을 주저한다고 보고 그 근거로 추정되는 법 조항에 대한 금융위원회 판단을 통해 배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□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배임과 관련하여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바 없으며, 키코 피해 배상이 **은행법 제34조의2**에 따른 **불건전영업행위**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(5.26일)하였습니다.
- 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「은행업감독규정」제29조의3에 따라 **5가지 절차***를 이행하고,
 - *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,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, 내부통제기준 운영,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

- **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내**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한다면 **은행법을 위반**하는 것이 **아니라고 회신** (5.27일)하였습니다.
- □ 이러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의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*를 판단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 - * 형법상 배임 여부는 금융관련 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며, 따라서 금융위가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